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상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2011년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구축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대금e바로" 시스템의 복잡성, 노후화, 보안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온 바, 이러한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으로의 전면

사용전환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스템 사용전환과 관련된 현행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일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